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호외(號外) 1 1933(昭和 8)년 10월 1일 일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483호(號)

1932(昭和 7)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687호(號) 조선·만주 간 발착하물통관취급규칙(朝鮮滿洲間發著荷物通關取扱規則) 중(中)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33(昭和 8)년 10월 1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제2조(條) 본(本) 규칙(規則)에서 세관소재역(稅關所在驛)이란 아래[左]의 역소(驛所)를 말함.

조선총독부철도국선(朝鮮總督府鐵道局線: 이하[以下] 국선[局線]이라 칭[稱]함)

부산(釜山), 대구(大邱), 경성(京城), 평양(平壤), 신의주(新義州),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 마산(馬山), 목포(木浦), 군산(群山), 인천(仁川), 진남포(鎭南捕), 원산(元山), 성진(城津)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선철도관리국선(南滿洲鐵道株式會社北鮮鐵道管理局線: 이하[以下] 북선선[北鮮線]이라 칭[稱]함)

청진(淸津), 회령(會寧), 상삼봉(上三峰), 남양(南陽), 웅기(雄基)

제3조(條) 중(中) 「남양(南陽)」을 삭제(削除)함.

제3조(條)에서 제5조(條)까지, 제9조(條) 및 제18조(條) 중(中) 「조선총독부철도국선 세관소재역(朝鮮總督府鐵道局線稅關所在驛)」을 「국선 및 북선선세관소재역(局線及北鮮線稅關所在驛)」으로 개정(改正)함.

제21조(條) 투먼역(圖們驛) 경유(經由) 및 투먼역발착 (圖們驛發著) 조선(朝鮮)·만주(滿洲) 간(間) 철도운수하물(鐵道運輸荷物)의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통관취급(通關取扱) 방면(方面)에 대해서는 전(前) 각조(各條)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함. 단(但) 제3조(條) 및 제18조(條)에 있어서 신의주(新義州) 및 신의주하급소(新義州荷扱所)에 관(關)한 제외례(除外例)는 이것을 남양역(南陽驛)에 관(關)하여 준용(準用)하는 것으로 함.

제22조(條) 부산(釜山), 목포(木浦), 군산(群山), 인천(仁川) 또는 진남포역(鎭南捕驛) 경유(經由) 조선(朝鮮)·만주(滿洲) 간(間) 혹은 조선(朝鮮)·지나(支那) 간(間) 발착철도(驛發著鐵道), 항로(航路) 연대운송하물(連帶運送荷物)의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통관취급(通關取扱) 방면(方面)에 대해서는 전(前) 각조(各條)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함. 단(但) 상해발착(上海發著)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0조(條)를 준용(準用)하지 아니함.